

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개정 고시, 8월 31일부터 시행

-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
-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,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,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,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(민간 발주자, 시공사)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.
 -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‘품목조정률’ 또는 ‘지수조정률’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.
 - 또한,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(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) 또는 중재(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)가 가능하나,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.
 -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‘도급계약 체결시점’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.
 - 이 외에도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,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장우철 (044-201-3504)
	건설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효석 (044-201-4597)

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

- (현황)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'표준도급계약서'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,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*

*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% 이상일 때 조정 가능

-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

- (개선)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'품목조정률' 또는 '지수조정률'로 명확화*

* 품목 또는 비목,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% 이상일 때 조정 가능하며,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% 이상인지로 판단

· 품목조정률 =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 계약금으로 나눠 산출

· 지수조정률 = 각 비목군에 국가·한은 등의 공표하는 지수 등을 활용하여 가중평균으로 산출

- 또한,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*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

* 조정금액 = 물가변동적용대가 × (1-선급금률) ×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

□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유도

- (현황)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

-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

- (개선)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(도급 계약체결 시)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

□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규정

※ 납품대금 연동제 사이트(www.smes.go.kr, 중소벤처기업부)에서 상세사항 확인 가능

○ (현황) 법률* 개정에 따라 '납품대금 연동제**'가 '23.10월부터 시행 예정

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상생협력법)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」(이하 하도급법)

** 납품대금의 10%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(10% 이내 범위)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,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

- 위탁자 ↔ 수탁자 간 거래(상생협력법), 원도급사 ↔ 하도급사 간 거래(하도급법)에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해당 가능

<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률(상생협력법) 주요사항 >

제21조(약정서의 발급)

-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**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**하여야 한다.
4.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**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위탁기업은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** 해당하는 경우 **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.**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 1.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**소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 2. 수탁·위탁거래의 기간이 **90일 이내의 범위**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
 3. 납품대금이 **1억원 이하**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 4.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**하지 아니하기로 합의**한 경우
- ⑤ **중소벤처기업부장관**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**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**하고, 그 사용을 **권장**하여야 한다.

○ (개선) 표준약정서 사용(상생협력법 제21조제5항), 적용 예외사유(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)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